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서

(동반협력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경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수금과 관련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구매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② “1 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받는 기업 중 은행과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약정이나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③ “동반협력기업”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 차협력기업, 2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 차협력기업, 3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 차협력기업중 상위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과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약정이나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 ④ “협력기업”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⑤ “원청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1 차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하며,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 ⑥ “상생매출채권”이라 함은 원청채권을 근거로 하여 1 차협력기업부터 3 차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하위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 ⑦ “매출채권” 이라 함은 원청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⑧ “상위기업”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 차협력기업에게는 구매기업을, 2 차협력기업에게는 1 차협력기업을, 3 차협력기업에게는 2 차협력기업을, 4 차협력기업에게는 3 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⑨ “하위기업”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매기업에게는 1 차협력기업을, 1 차협력기업에게는 2 차협력기업을, 2 차협력기업에게는 3 차협력기업을, 3 차협력기업에게는 4 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 ⑩ “전자방식” 또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MP,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채권의 발행, 결제, 조회 및 대출 취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은행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⑪ “MP(Market Place)”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⑫ “B2B이용수수료” 라 함은 MP를 통하여 상생매출채권 관련거래가 중계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대금을 입금받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가입 및 운용)

- ① 이 약정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일에 입금 받는 약정과 해당 매출채권에 근거하여 하위기업에게 본인명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약정을 겸합니다.
- ② 본인이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원청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에 근거하여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 약정과 별도로 MP 에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등은 MP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제3조 (입금계좌 지정)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입금 및 하위기업 대출금의 환출이자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 고
-----	-----------	------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	-----------------------------------

제 4 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 ① 본인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조건에 따라 본인명의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1 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2.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로 부터 최장 180 일 이내로 합니다.
 - 3.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 금액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을 차감한 발행가능 금액내에서 건별 최소 1 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② 상생매출채권은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③ 원청채권을 발행한 구매기업 및 동 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기업을 하위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은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 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생매출채권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1. 하위기업이 일부라도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을 취급한 경우
 - 2. 하위기업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일부라도 하위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 3.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에스크로자금이 예치된 경우
- ③ 상생매출채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동의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1. 상생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2.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송달된 경우
- ⑤ 상생매출채권의 취소에 관한 하위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기업 앞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취소신청서 제출 시 하위기업의 동의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⑥ 상생매출채권의 변경은 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후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

- 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② 전 항의 양도통지는 최종 신고된 주소지(다른 방법 이용시 사전에 합의된 통지처) 로 통지하며 주소지 변경등으로 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대출취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

- ① 상생매출채권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은 채권 건별로 다음 순서대로 처리 합니다.
 - 1. 원청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합니다.
 - 2.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의 만기일에 결제할 때,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 3.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만기 결제하며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다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4. 원청채권 만기일 이후에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영업일에 해당 대출금을 중도상환합니다.
- ② 전 1 항 1 호 및 4 호에 의해 하위기업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환출이자는 상위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③ 대출이 취급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원청채권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원청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 ④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한 결제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은 본인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거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은행의 내구에 의해 여신취급이 금지되는 경우
- ② 구매기업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③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전자방식의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에 의해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하여 구매기업의 미결제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된 경우
- ⑤ 허위·가공거래, 유통 등 경상적인 상거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이 발행된 경우
- ⑥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망 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본 약정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상생매출채권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① 매출채권 만기결제 시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인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 이차청구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이용수수료)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대가로 상생매출채권별로 다음과 같이 B2B 이용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입금 시에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수수료는 채권금액을 전액 입금받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일부라도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B2B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가 별도로 약정한 B2B이용수수료를 계산방법에 따르며, MP와의 약정변경으로 B2B이용수수료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해당 MP 사이트에 게시하되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 이상 알리기로 합니다.

제 11 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기업 및 하위기업, MP 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① 상위기업 및 MP 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 ② 하위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제12조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